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5-76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2
● 공 고	
제2015-61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5-621호 :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15-6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9
제2015-62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제2015-627호 :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32
제2015-6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제2015-630호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36
제2015-6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seoul.kr (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 2015 - 7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1. 사 업 명 : 다산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2. 위치 및 규모 : 26개 점포
 - 중구보건소 앞(4개소), 신당동 떡볶이 타운 주변(22개소)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3. 사업내용 : 불법간판을 거리 특색에 맞는 우수한 간판으로 개선
4. 사업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1월까지
5. 사업방법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주민자율추진
6. 소요예산 : 531,100천원(시비 251,100천원, 구비 280,000천원)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0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의 개·폐업 및 휴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추진내용
 - 거리 특색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8.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 간판수량 : 1업소 2간판(주거지역은 1업소 1간판) ※ 단, 도로의 곡각지점인 경우 가로간판 1개를 추가하여 설치 가능
가로형 간판	○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 ○ 표시규격 ▶ 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
돌출 간판	○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 ○ 표시규격 ▶ 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 ▶ 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
창문 이용 광고물	○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 ○ 판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 ○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 ○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
기 타 준수 사항	○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 ○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 ○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 ○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시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9. 허가 및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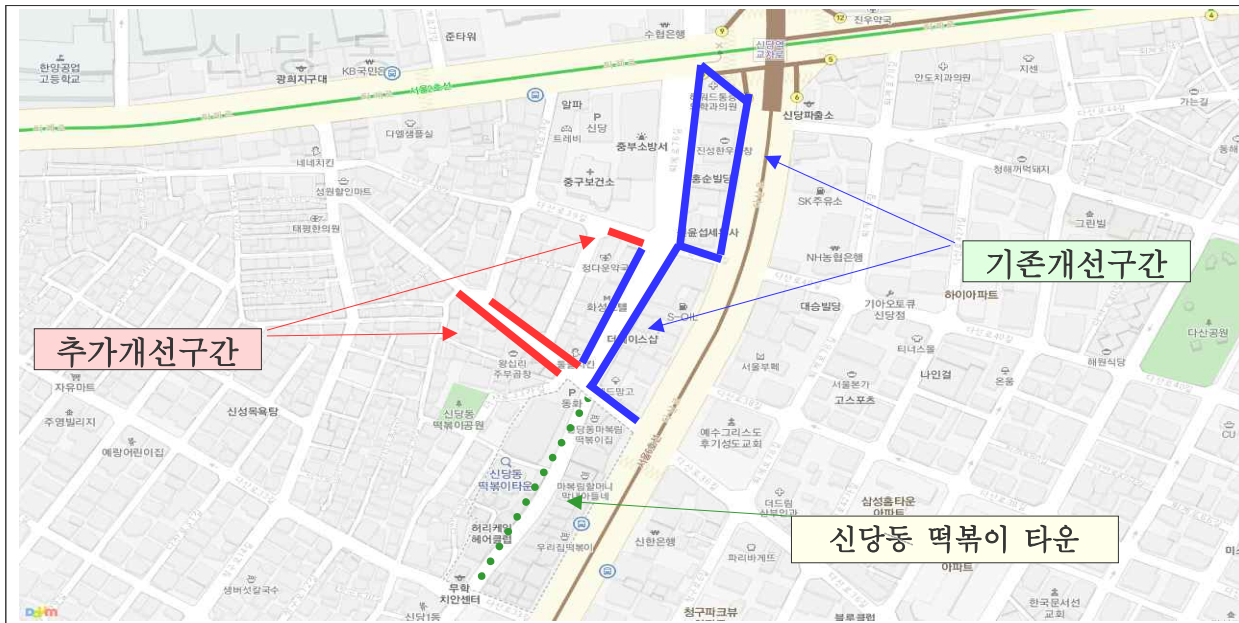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 618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2015.5.18. 개정, 2015.11.19. 시행)」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 정비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등이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같은 법 제5조의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서 제23조, 제29조, 제34조로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 정비함. (안 제1조~제3조, 별표)
-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제3항에서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함. (안 제5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게 기재하였거나, 중복 재기재하여 실효성이 사라진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처리 · 관리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서식을 정비함. (안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 개정된 지역보건법 시행일이 공포후 6개월 경과한 2015.11.19.일로 부칙에 규정하여 이 조례 시행일은

2015.11.19일로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무학동), 문의전화 : 3396-6401, FAX : 3396-8910, 메일 : ksh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26조 제2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에 따른”을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u>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u>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u>지역보건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 <u>지역보건법</u>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u>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u> 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u>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다.</u>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 」을 따른다.
② <u>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u>	<삭 제>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8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 62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4.03.25.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문구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고시 절차를 신설(안 제2조의2)
- 나.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상위법인 상위법에 따른 가축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범위를 적용하여 본 취지와 맞지 않아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의로 개정(안 제2조)
- 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따른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 범위 신설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을 사육허가 시설로 명시 개정(안 제3조제3호)
- 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내용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시장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3396-5075, FAX: 3396-8681, 메일: msvet@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 제목 “사육허가의 절차등” 을 “사육허가의 절차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u>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u>축산법</u> 제2조에 따른 <u>가축</u>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 용으로서 <u>규칙</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조(사육허가) <u>사육이 제한되는 가축</u>	제1조(목적)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가축</u>으로 한다. ----.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사육허가) <u>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u>

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공공단체·학교·의료법인·수의사 또는 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신 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 (생 략)

제7조 (생 략)

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축 주	주 소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사육장소재지				사 육 기 간			
--------	--	--	--	---------	--	--	--

축 사 및 사 육 규 모	구분	축 사			사 육 두 수		
	축종	부지면적	동 수	건물 총면적	성 축	자 축	계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

1.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2. 사육장 소재지 :

3. 허가기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구분 축종	축 사			사 육 두 수		
	부지면적	동 수	건물 총면적	성 축	자 축	계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 - 625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이에 맞추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미화원 고용 자격기준 개정 (제7조)
 - 환경미화원 고용 부적격 기준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 환경미화원 채용 및 인사관리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 전화:3396-5482, FAX:3396-8754, 메일:jun731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
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
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 자 격 증	
⑥ 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				
⑦ 병역관계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 연령	만 세	

계 _____

인

<u>응 시 표</u>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⑧ 응시번호	⑨ 성 명	(한글)	⑩ 성별	남	⑬ 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⑪생년월일		⑫연령	만 세	

(뒷면)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험 일 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 화 번 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험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 ⑤ 자 격 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 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병 역 관 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응 시 번 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⑨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 ⑩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 표할 것.
- ⑪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 ⑫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 ⑬ 사 진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210mm×297mm(인쇄용지(2급)60g/m²)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소속												고용일자			
성명	한글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종	병 과		계급	군 번		입대일	제대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 족 관 계									자 격 증						
									상 벌 관 계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 당 업 무	기 타 사 항	기록자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회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자격기준) ① (생략) 1. (생략) 2. <u>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u> 3. ~ 7. (생략) ②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회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7조(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시원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table><tr><td>②주 소</td><td colspan="2"></td><td>③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④최종출신학교</td><td colspan="2">(졸업, 중퇴)</td><td>⑤자 격 증</td><td colspan="2"></td></tr><tr><td>⑥경 력 (최 근)</td><td>근 무 기 간</td><td>근 무 처 명</td><td colspan="3">담 당 업 무</td></tr><tr><td colspan="6"></td></tr><tr><td>⑦병역관계</td><td colspan="5"></td></tr><tr><td>⑧응시번호</td><td>⑨성 명 (한글)</td><td>⑩성 별</td><td>남</td><td colspan="2">⑬사 진</td></tr><tr><td></td><td>(한자)</td><td>성 별</td><td>여</td><td colspan="2"></td></tr><tr><td></td><td>⑪주민 등록번호</td><td>⑫연 령</td><td>만 세</td><td colspan="2">(반명합판)</td></tr></table> 계 인 응시표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table><tr><td>⑧응시번호</td><td>⑨성 명 (한글)</td><td>⑩성 별</td><td>남</td><td colspan="2">⑬사 진</td></tr><tr><td></td><td>(한자)</td><td>성 별</td><td>여</td><td colspan="2"></td></tr><tr><td></td><td>⑪주민 등록번호</td><td>⑫연 령</td><td>만 세</td><td colspan="2">(반명합판)</td></tr></table>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②주 소			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자 격 증			⑥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병역관계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주민 등록번호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주민 등록번호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시원서 중구청장 귀하 ① 나는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할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고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table><tr><td>②주 소</td><td colspan="2"></td><td>③전화번호</td><td colspan="2"></td></tr><tr><td>④최종출신학교</td><td colspan="2">(졸업, 중퇴)</td><td>⑤자 격 증</td><td colspan="2"></td></tr><tr><td>⑥경 력 (최 근)</td><td>근 무 기 간</td><td>근 무 처 명</td><td colspan="3">담 당 업 무</td></tr><tr><td colspan="6"></td></tr><tr><td>⑦병역관계</td><td colspan="5"></td></tr><tr><td>⑧응시번호</td><td>⑨성 명 (한글)</td><td>⑩성 별</td><td>남</td><td colspan="2">⑬사 진</td></tr><tr><td></td><td>(한자)</td><td>성 별</td><td>여</td><td colspan="2"></td></tr><tr><td></td><td>⑪생년 월일</td><td>⑫연 령</td><td>만 세</td><td colspan="2">(반명합판)</td></tr></table> 계 인 응시표 20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table><tr><td>⑧응시번호</td><td>⑨성 명 (한글)</td><td>⑩성 별</td><td>남</td><td colspan="2">⑬사 진</td></tr><tr><td></td><td>(한자)</td><td>성 별</td><td>여</td><td colspan="2"></td></tr><tr><td></td><td>⑪생년 월일</td><td>⑫연 령</td><td>만 세</td><td colspan="2">(반명합판)</td></tr></table>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②주 소			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자 격 증			⑥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병역관계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생년 월일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생년 월일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②주 소			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자 격 증																																																																																																																																		
⑥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병역관계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주민 등록번호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주민 등록번호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②주 소			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자 격 증																																																																																																																																		
⑥경 력 (최 근)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명	담 당 업 무																																																																																																																																		
⑦병역관계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생년 월일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⑧응시번호	⑨성 명 (한글)	⑩성 별	남	⑬사 진																																																																																																																																	
	(한자)	성 별	여																																																																																																																																		
	⑪생년 월일	⑫연 령	만 세	(반명합판)																																																																																																																																	

현행	개정안
(뒷면)	(뒷면)
응시원서작성요령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일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① 시험일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② 주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② 주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③ 전화번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③ 전화번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증 해당란에 표할 것.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학구분증 해당란에 표할 것.
⑤ 자격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⑤ 자격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⑥ 경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⑥ 경력 : 가장 최근 근무한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⑦ 병역관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⑦ 병역관계 : 병역사항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⑧ 응시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⑧ 응시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⑨ 성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⑨ 성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⑩ 성별 : 해당 상별란에 표할 것.	⑩ 성별 : 해당 상별란에 표할 것.
⑪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⑪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⑫ 연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⑫ 연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⑬ 사진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⑬ 사진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탈모, 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table><thead><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성명</th><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th rowspan="2">성별</th><th rowspan="2">채용시험 합격일자</th><th colspan="4">신원조사</th><th colspan="2">고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의뢰일자</th><th>확보일자</th><th>확보내용</th><th>고용가부</th><th>고용일자</th><th>근무부서</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고용순위명부 <table><thead><tr><th rowspan="2">연번</th><th rowspan="2">성명</th><th rowspan="2">생년월일</th><th rowspan="2">성별</th><th rowspan="2">채용시험 합격일자</th><th colspan="4">신원조사</th><th colspan="2">고용</th><th rowspan="2">비고</th></tr><tr><th>의뢰일자</th><th>확보일자</th><th>확보내용</th><th>고용가부</th><th>고용일자</th><th>근무부서</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시험 합격일자	신원조사				고용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고용가부	고용일자	근무부서																																																																									
210mm×297인쇄용지(2급)60g/㎡												210mm×297인쇄용지(2급)60g/㎡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앞면)																【별지 제3호서식】 환경미화원 기록 카드 (앞면)																															
소속																고용일자																															
성명		활동 한자		성 별		<u>주민등록번호</u>		주 소		전화번호		호주상명 및 관계 의 ()				성명		한글 한자		성 별		<u>생년월일</u>		주 소		전화번호		호주상명 및 관계 의 ()																			
				남 여																남 여																											
				개인 신 장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개인 상		체 중		시 력		혈액형		건강상태		종교		학력		최종출신학교명											
				신상				좌 우														신상				좌 우																					
				병역		미 필		역 종		병과		계급		군 번		입대 일		제대 일		복 무 기 간				병역 미 필		역 종		병과		계급		군 번		입대 일		제대 일		복 무 기 간									
				관계																년 월				관계												년 월											
구분		관계		성명		<u>주민등록번호</u>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구분		관계		성명		<u>생년월일</u>		학 력		직 업		구 분		년 월 일		종 류		시 행 청							
가족관계												자 격 증										가족관계																									
(뒷면)																(뒷면)																															
경력 및 발령사항																경력 및 발령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가제사항				기록자인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가제사항				기록자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본 인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관장		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중 구 청 장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5-62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 규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자치구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가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주민의 수 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감사청구는 19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에서 “주민 200인”을 “주민 100명”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3396-4403, FAX : 3396-4301, E-mail : qikh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외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중 “주민 200인”을 “주민 100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9세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 의 연서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 ----- - 주민 100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27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3-46호(19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1호(1996.11.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호(2014.2.6.)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중구 찰때로 5 (의주로2가) 일대 서소문역사공원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서소문역사공원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의주로2가) 일대
3. 면 적 : 21,363㎡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계	17,340.00	5,425.95	21,363.00	7,310.45	
도 로	2,929.90	2,929.90	2,209.21	2,209.21	감 720.69㎡
광 장	867.84	867.84	2,785.82	2,785.82	증 1,917.98㎡
조경시설	277.68	277.68	350.89	350.89	증 73.21㎡
휴양시설	(29.82)	(29.82)	655.59	655.59	증 655.59㎡
유희시설	-	-	-	-	
운동시설	670.03	670.03	-	-	감 670.03㎡
교양시설	166.00	166.00	1,030.96	1,030.96	증 864.96㎡
편익시설	344.39	344.39	191.16	191.16	감 153.23㎡
관리시설	170.11	170.11	86.82	86.82	감 83.29㎡
녹지및기타	11,914.05	(1,507.23)	14,052.55	(2,764.90)	증 2,138.50㎡
시설율(법적제한없음)	$(5,425.95/17,340.00) \times 100 = 31.29\%$		$(7,310.45/21,363.00) \times 100 = 34.22\%$		
건폐율 (20%이하)	$(149.36/17,340.00) \times 100 = 0.86\%$		$(1,195.85/21,363.00) \times 100 = 5.60\%$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3396-5852)
8.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2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 처리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심재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문의전화 : 3396-5754, FAX : 3396-8777, 메일 : chinu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고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⑥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⑤(생략) <u><신 설></u>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⑤(현행과 같음) <u>⑥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보류 등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소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630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9.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부의 안건 : 총13건(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산정보과 (3396-4704)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경제과 (3396-506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3396-510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 평등 기본 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04)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3396-541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3396-549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3396-545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3396-546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 경 과 (3396-5633)
동의안	201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3396-4603)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세무1과 (3396-5102)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복지지원과 (3396-5303)
의견 청취안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심재생과 (3396-5773)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담당(☎3396-49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5 - 63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
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100선」 책자의 규제개혁 개선사례로,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규정이 있는 조
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 조항 삭제 (조례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공보실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 (예관동 120-1), 전화 : 3396-4962,
FAX : 3396-9024, thinker@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공보실(☎3396-49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임무) (생략)	제2조(임무) (현행과 같음)
제3조(위촉) (생략)	제3조(위촉)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 해제) (생략)	제4조(위촉 해제) (현행과 같음)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제6조(운영) (생략)	제6조(운영) (현행과 같음)
제7조(예우 및 보상) (생략)	제7조(예우 및 보상) (현행과 같음)